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. 26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1.22. 송병길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.1.23.
- 다. 상정일자 : 제21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8.1.2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효식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법규해석 등에 관한 사항, 쟁송사건의 소송수행, 의안심사,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
- 2) 고문의 정원, 위·해촉사항 및 임기 (안 제3조~제6조)
- 3) 자문 요청 등 (안 제7조)
- 4) 입법·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 (안 제8조)
- 5) 입법·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(안 제9조)
- 6) 입법·법률고문은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 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송인수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22일 송병길 의원의 대표 발의 및 9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2018년 1월 2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입법예고(2018.1.22.~2018.1.26.)결과 의견은 없었으며,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.
- 본 조례안의 목적은 마포구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, 의안 심사, 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회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, 정원, 위·해촉에 관한 사항, 임기, 고문료 비용에 관한 사항 등 입법·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미비점이 없다고 사료되며,

- 이에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의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,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자치구 19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
- 이에 우리 구의회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,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